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35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윤준병 · 손 술 · 박범계
주철현 · 문대림 · 이정문
박민규 · 이성윤 · 김동아
임미애 · 양부남 · 홍기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

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신고포상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u> <u>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u> <u>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u> <u>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u>

<u><신 설></u>	<u>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u>제31조의2(신고포상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신고 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